경기스타트업캠퍼스 보육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

우수 아이디어 및 혁신 기술 중심의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 단계별 보육 지원을 위해 경기스타트업캠퍼스 보육공간 입주 희망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2026년 2월 12일
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

1 보육공간 현황

□ **위치 :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 스타트업캠퍼스**

○ 주소 :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, 스타트업캠퍼스 공동보육실 1, 2동 2~5, 8층

□ **공간구성**

○ 보육공간 : 3개층 (60개사)

구 분	예비(3층)	초기(5층)	성장(8층)
보육규모	20개사 [786.22㎡]	20개사 [816.45㎡]	20개사 [1,136.84㎡]
보육 공간※			

※ 보육공간은 **개방형 공간**으로 보육규모는 입주인원 등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○ 공용공간 : 교육장, 멘토룸, 회의실, 휴게실, 네트워킹 공간 등

○ 경기스타트업캠퍼스 둘러보기=>https://youtu.be/cuN28zKPaRI?feature=shared

2 모집 개요

□ **모집 기간** : '26. 02. 12.(목) ~ 03. 17.(화), 15:00 까지

□ **모집 대상** : 첨단업종※(IT, BT, NT, CT)분야 기술창업 7년 이내 (예비)기업 중 업력과 경영실적조건(매출, 투자, 고용 중 1개) 충족 자
단, 신산업분야*(일부제외)는 10년 이내기업 **[참고 1]**

※ IT·BT·NT·CT(Information·Bio·Nano·Culture Technology)

구 분	개 념
IT	• AI, 핵심부품,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, 정보처리시스템 및 SW, 기타 정보기술 등
BT	• 기초 기반 기술, 보건의료 관련 응용, 농업 해양 환경 관련 응용 등
NT	• 나노소자 및 시스템, 나노소재, 나노 바이오 보건, 나노기반 공정 등
CT	• 문화 컨텐츠, 생활문화(사이버 커뮤니케이션 등), 문화유산 등

□ 모집 규모 : 00개사

구분		예비(3층)	초기(5층)	성장(8층)
모집규모		00개사	00개사	00개사
업력조건		예비창업자 ~ 2년 이내 기업	5년 이내 기업	7년 이내 기업
경영 실적 조건	매출액	-	5천만원 이상('25년)	1억원 이상('25년)
	투자유치	-	-	TIPS/WINGS 선정기업('25년)
	근로자	-	3명 이상(대표 제외)	
입주인원		4인 이하/기업당	10인 이하/기업당	
		※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가입자(대표자 포함)에 한하며, 초과 배정 불가		

※ 업력조건 : 공고일 기준(창업기업확인서 참고)

※ 경영실적조건 : 매출액(전년도 매출기준), 투자유치(전년도 협약체결), 근로자(공고일 기준)중 1개이상 충족기업

※ 입주인원은 기업 근로자 수와 별개로, 보육공간 사용 인원임

※ **<u>각 단계별(층별) 중복 신청 불가하며</u>, 모집규모는 인원, 입주환경,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됨**

※ 8층(성장) 모집규모의 50% 이내는 전년도 TIPS/WINGS 선정기업에 할당, 서류심사면제

- 예비창업자 :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
- 창업기업 :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(신산업분야(일부제외)는 10년 이내기업)
  - 개인사업자(법인전환 포함) : 사업자등록증명 상 '개업일(공장설립계획 승인시 등록일)' 기준 (단,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·양수 경우 양도 개인사업자 '개업일' 기준)
  -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

□ 신청(지원) 제외 대상

○ 금융기관이 채무불이행 및 법 위반 등으로 정부·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

○ 휴·폐업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

○ 소음·진동·폐수·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

○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(아이템 포함)

□ **추진 일정**

접 수	1차 서류심사	2차 발표심사	결과 통보	협약·입주
온라인 접수 (www.egbiz.or.kr)	2차 발표심사 대상자 선정	대표자 발표 원칙 5분 발표, 5분 질의응답	최종 선정기업 개별 통보	입주수수료 납부/협약체결
’26.2.12.~3.17.	3월 중	4.8~10	4.15(예정)	~ 5월

※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3 선정 및 평가

□ **선정방법** : 심사위원회를 통한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

○ 심사위원회 : 창업 전문기관(업), 투자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

○ 1차 서류심사 :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등 제출서류 기반 심사

- 면제 : 성장(8층)에 신청한 TIPS/WINGS ’25년 선정기업

○ 2차 발표심사 : 예비, 초기, 성장 층별 심사(5분 발표, 5분 질의응답)

○ 최종 선정 : 심사위원회 평점 중 최고·최저평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여 총 평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 선정(동점시 사업성 및 시장성 고득점순)

- 최종 선정기업 중 포기 발생 시 60점 이상 중 차 순위 선정

□ **평가기준**

○ 1차 서류심사 : 사업추진능력(20점), 입주필요성(10점), 기술성(30점), 사업성 및 시장성(40점), 가점(최대 5점, 1차 서류심사만 적용)

- 가점(각 2점) : 최근 2년내 경기도주관 창업관련 오디션수상 자(기업), 최근 2년내 투자협회(엔젤/VC/AC), 공공 등에서 투자받은 기업, 경기도외 본사 소재 기업

○ 2차 발표심사

- 예비/초기(3/5층) : 사업추진능력(40점), 기술성(30점), 사업성 및 시장성(30점)

- 성장(8층) : 창업기업역량(40점), 제품기술성 및 경쟁력(30점), 사업성 및 시장성(30점)

○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적용

• 「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(2021.3.16. 제정)」에 따라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 평가 **총점의 20% 감점** 적용.
- 위반사실 적용법률 : 4개 분야(공정/납세/노동/환경) 11개 법률
- 위반사실 확인 : (납세)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요구, (공정/노동/환경) 道 일괄 조회 요청
단, 법 위반 사실이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(이미 치유가 완료된 행위 또는 치유 예정 행위)에 해당하는 경우 「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」 제출 시 감점 미적용
※ 이행각서 미제출 시 유예없이 총점의 20% 감점 적용

4 보육기업 지원내용

□ **사무(업무)공간 제공**

○ 입주기간 : 1년(최초) + 1년(연장※평가 '승인' 시)

- 최초 협약일(예정) : 2026.5.1.~2027.4.20.(변경될 수 있음)

※ 연장(예정)협약종료일이 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에 한해 신청가능

○ 입주조건

- 협약체결 전 입주수수료 납부(임대료 및 관리비는 무료)
- 협약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입주, 60일 이내 사업장 본사 주소지 이전(등록)
- 보육공간 상주 근무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 규정 등 준수

○ 입주수수료 : 입주 인원수를 기준으로 부과

구 분	1인	2인	3~4인	5~6인	7~8인	9~10인
입주수수료 (1년 기준, VAT 포함)	30만원	40만원	50만원	80만원	110만원	150만원
비 고	· 사무실 내 책상, 의자 등 사무가구 및 회의실 등 제공 · 인터넷, 복합기, 커피 등 서비스 제공 · 입주수수료는 보육기업 서비스 제공, 보육환경 개선 등으로 사용					

□ **지원 프로그램**

○ 교육 및 네트워킹 지원 : 연 4회 네트워킹 행사 운영

5 신청 및 문의

□ **신청·접수 기간** : '26. 02. 12.(목) ~ 03. 17.(화) 15:00 까지

○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음

□ **신청방법** : 경기기업비서(www.egbiz.or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

- 경기기업비서(www.egbiz.or.kr) 회원가입 및 로그인 → 분야별 지원사업 → 창업 → '2026년 경기스타트업캠퍼스 보육공간 입주기업 모집' 선택 → 공고문 하단 '지원사업 신청하기' 선택 → 기본사항 입력 및 파일(제출서류) 업로드
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모두를 1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(최대 10M)
  예시)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입주신청서_3층_홍길동.pdf

□ **제출 서류** (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정)

제 출 서 류	예비 창업자	창업기업
- [지정양식] 제출서류 목록	필수	필수
- [지정양식] 신청서	필수	필수
- [지정양식] 사업계획서	필수	필수
- [지정양식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	필수	필수
- [지정양식] 평가기준 및 결과 수락 확약서	필수	필수
- [지정양식] 기업의 법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약서 등 관련서류	×	필수
- 국세납세증명원(국세청 홈텍스) - 지방세납세증명원(민원24)	필수	필수 (대표자, 법인)
- 신분증 사본(공동대표, 각자대표 모두)	필수	필수(대표자)
- 사실증명원(국세청 홈텍스, 기한없이 발급) 사업자등록이력有-총사업자등록내역 / 無-사업자등록사실내역	필수	×
- 창업기업확인서(창업기업확인 시스템) ※신산업의 경우, '(기업명)의 창업기업 확인안내'공문 제출	×	필수
- 사업자등록증명(국세청 홈텍스)	×	필수
- 법인등기부등본(법원 인터넷등기소)	×	법인 필수
-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(국세청 홈텍스, 세무기장대리인확인본), 전년도 창업(혹은 미결산)기업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(국세청 홈텍스)	×	필수
- 4대보험 가입증명서(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)	×	필수
- 사업계획서 내 증빙서류(지재권, 인증서, 상장 등)	해당 시	해당 시
-[가점1]최근2년내 경기도주관 창업관련 오디션 수상 증빙서류 -[가점2]최근2년내 투자유치확약서, 입금내역 -[가점3]도외기업(사업자등록증명으로 갈음)	[가점1] 해당 시	해당 시
- (전년도) TIPS/WINGS 선정 협약서	×	해당 시

□ **문의처 :**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본부 스타트업지원팀

○ 위 치 : 스타트업캠퍼스 2동 4층 운영사무실

○ 연락처 : 031-8039-7102, 7103, 7110

6 유의 사항

○ 공고문에 위배 되거나, 신청서 등 제출서류 허위기재 또는 고의누락의 경우, 선정 취소,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○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하고, '신청(지원) 제외 대상'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,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 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, 퇴거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○ 신청은 대표자 명의로 해야 하며,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평가대상에서 제외(탈락처리)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조치 됨

○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졸업(예정)기업은 입주했던 동일층에 신청할 수 없고, 공고일 기준 창업자인 경우 예비창업자로 신청할 수 없음

○ 과거 경기스타트업캠퍼스 보육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, 입주를 포기한 경우 신청할 수 없음

○ 사무(업무)공간 배정은 신청 인원, 입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며, 신청자가 자리를 선택할 수 없음

○ 입주시기 및 사무(업무)공간은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○ 입주수수료는 협약기간 단위로 부과(1년 미만 시에도 1년 기준 부과)하며, 협약체결 前 전액 일시불 납부(중도 퇴거, 개인 사정, 기타 사유 등으로 환불 또는 환급되지 않음)

○ 선정된 자(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기업)는 타 지원사업을 통해 중복하여 입주지원을 받을 경우, 협약일 이전까지 지원사업을 포기·변경 등을 해야 함

○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는 변경 불가하며, 서류 미비, 기재 착오·누락, 연락 불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
○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,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, 기 입주기업의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모집 규모가 확정됨

○ 본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,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
≪위법 ·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≫

❍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〔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.

-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-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 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 시)
-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
-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

【참고 1】 신산업 창업 분야(제3조제1항 관련)

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[별표1] 신산업 창업 분야(제3조제1항 관련)			
① 인공지능	⑧ 스마트제조	~~⑮ 드론·개인이동수단~~	㉒ CUS(탄소포집·활용·저장)
② 빅데이터	⑨ 시스템반도체	~~⑯ 미래형 선박~~	~~㉓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~~
③ 5G+	⑩ 자율주행차	⑰ 재난/안전	~~㉔ 우주~~
④ 블록체인	⑪ 전기수소차	⑱ 스마트시티	~~㉕ 차세대 원전~~
⑤ 서비스플랫폼	⑫ 바이오	⑲ 스마트홈	㉖ 양자
⑥ 실감형콘텐츠	⑬ 의료기기	⑳ 신재생에너지	㉗ 사이버 보안
⑦ 지능형 로봇	⑭ 기능성 식품	㉑ 이차전지	

※ ⑮,⑯,㉓,㉔,㉕ 항목은 지원 불가

【참고 2】 경기스타트업캠퍼스 보육공간 졸업(예정)기업 입주자격(제10조제3호 관련)

졸업(예정)기업	신규 신청 가능 층		비 고
	5층(초기)	8층(성장)	
3층(예비)	가능(2개 층 중 택 1)		졸업(예정)기업 대상 층별 입주자격 충족시 신규 신청 가능
5층(초기)	x	가능	
8층(성장)	가능	x	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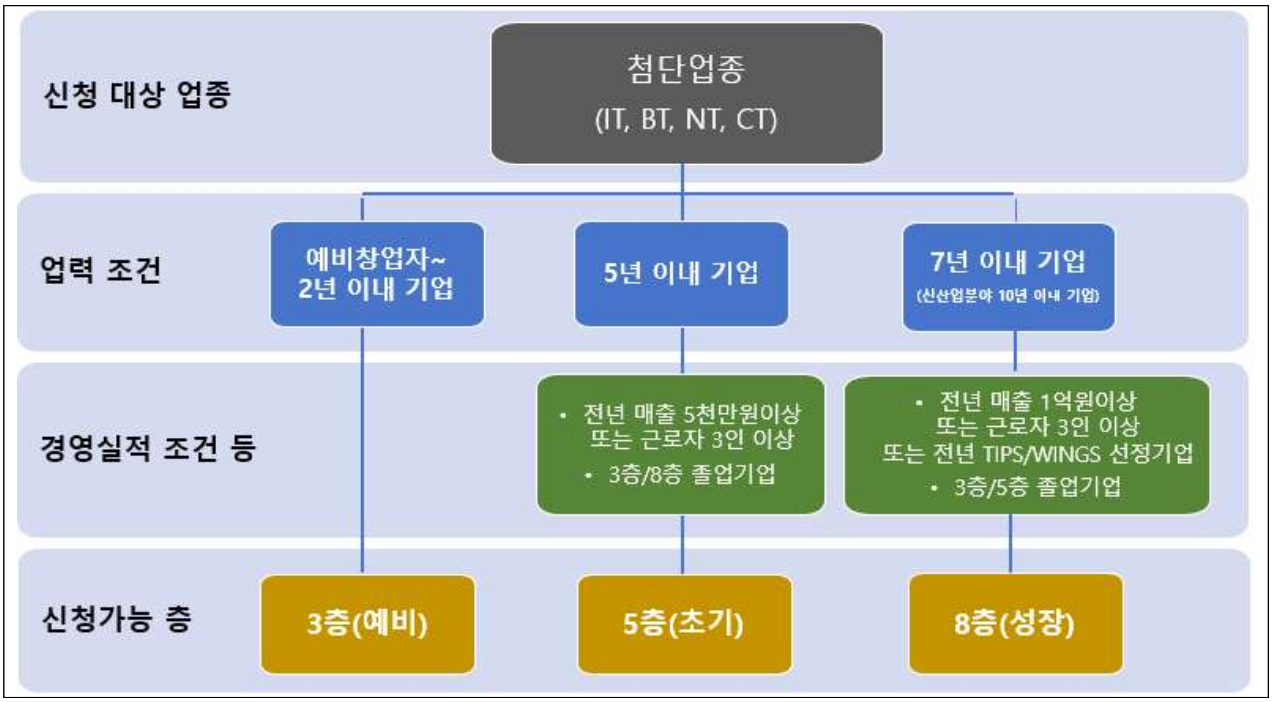
[참고 3] 경기스타트업캠퍼스 보육공간 신청자격 자가진단